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투자유치과 고승진 과장(044-203-4080), 이경훈 팀장(044-203-4081)

외국투자가와 손자회사간 합작투자의 길 열려

-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

□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(이하 외촉법 시행령) 개정안이 2월 18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됨에 따라, 개정된 외촉법 및 외촉법 시행령은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

□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,

○ 원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%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(증손회사)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,

○ 외촉법 개정으로 인해,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그 자회사(증손회사)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

- 다만, ①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*에 해당하고, ②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%이상을 소유하고, ③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%이상을 소유하고, ④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하여야 함

*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, 해당업종 및 규모(법제18조제1항, 시행령제25조)
⑴ 제조업, 정보통신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: 신규공장 설치, 외투 3천만불 이상,
⑵ 관광진흥업 : 외투 2천만불, ⑶ 물류업 : 외투 1천만불, ⑷ 연구시설 외투 2백만불 이상

- 또한,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이번에 개정된 외촉법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사항으로 손자회사와 합작증손회사의 사업관련성이 있는 지,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 적절한 지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

첫째, 합작증손회사의 사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손자회사의 사업과 사업관련성이 있을 것

- 손자회사의 상품을 주요 생산요소로 한 상품의 생산 등
- 손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등 생산요소의 공급
-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에 관한 연구개발
-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의 생산 등

둘째, 합작증손회사의 사업이 자회사보다 손자회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 더 적절할 것,

셋째, 합작증손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할 것,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

넷째, 합작증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말 것

□ 이번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1일부터 외국투자가와 국내 손자회사의 합작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,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이경훈 팀장(☎ 044-203-40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**

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2(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)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회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(이하 이 조에서 "일반지주회사"라 한다)의 손자회사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해당할 것
2.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소유하려는 주식의 발행법인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할 것
3.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수행하려는 사업이 그 법인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손자회사의 사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관련성이 있을 것
 가. 손자회사의 상품·용역을 주요 생산요소로 상품·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일 것
 나. 손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·용역 등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사업일 것
 다.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일 것
 라.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·용역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·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일 것
 마. 그 밖에 손자회사의 사업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일 것
4.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수행하려는 사업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) 사업과의 관련성 보다는 손자회사사업과의 관련성이 더 밀접하여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을 가질 것
5. 공동출자법인이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로 될 경우 그 공동출자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회사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 주식은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시작일 전일까지 모두 처분할 것

제39조의3(규제의 재검토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2에 따른 사전 심의 요건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